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83

발의연월일: 2021. 10. 19.

발 의 자:추경호·정진석·김용판

정운천 · 김예지 · 최형두

유의동 • 윤창현 • 조명희

강기윤 • 박완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 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 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중 "제재"를 "제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 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u>제</u>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u>제</u>
<u>재</u>) (생 략)	<u>재 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u><신 설></u>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
	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
	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제29조(벌칙) ① (생 략)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
	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②·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32조(조사와 처분) 제29조제1항	제32조(조사와 처분) <u>제29조제1</u>
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어	<u>항, 제3항 및 제4항</u>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	
다.	